#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64 발의연월일: 2025. 5. 21.

발 의 자:백선희·서왕진·김재원

신장식 · 강경숙 · 박은정

김준형 · 차규근 · 한창민

이해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형법」에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군인이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서 위헌·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헌· 위법적 명령인 경우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24조, 제25조).

#### 법률 제 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헌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작전 등 임무를 수행할 때 「대한민국헌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2항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속 군인의 이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인은 「계엄법」상의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하거나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 등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위헌적 명령이 하달된 경우 수명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

야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관의 명령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헌적 명령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군인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관의 위헌적 명령을 거부한 경우「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군인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①</u> ~ <u>④</u> (생 략)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①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 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u><신</u> 설>

<신 설>

하달된 경우 수명자는 지체없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 다.

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다만, 상관의 명령이 제24조제1 항에 따른 위헌적 명령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군인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관의 위헌적 명령을 거부한 경우 <u>「군형법」 제44조의 항</u> 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적법 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군인은 제24조제1항 및 제2 5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한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 우를 받지 아니한다.